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9

# 서 울 고 등 법 원

## 제 3 행 정 부

## 판 결

| | |
|---|---|
| 사 건 | 2016누69910 재산세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|
| 원고, 항소인 | [redacted] 주식회사 |
| 피고, 피항소인 |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 |
| 제 1 심 판 결 | 서울행정법원 2016. 9. 9. 선고 2015구합3874 판결 |
| 변 론 종 결 | 2017. 6. 22. |
| 판 결 선 고 | 2017. 7. 20. |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3. 5. 14.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재산세 458,291,430원, 지방교육세 91,658,2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## 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9

## 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0행의 "행정안전부령 제173호"를 "행정안전부령 제177호"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## 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문용선

판사 김복형

판사 남양우